

## 약관변경대비표

1. 약관명 : 『공과금 바로 납부 서비스 이용약관』
2. 변경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구)외환은행 약관 제1조 서비스 개요 및 제2조 서비스 이용 외 전반적인 변경

(구)하나은행 약관을 (구)외환은행 변경약관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개정 전(구.하나은행)	개정 후	비 고
제1조 서비스 개요 (생략)	제1조 서비스 개요 (좌동)	(구.하나은행 약관 준용)
제2조 서비스 이용 (생략)	제2조 서비스 이용 (좌동)	
제3조 공과금 납부금액이 틀리는 경우 처리방법 (생략)	제3조 공과금 납부금액이 틀리는 경우 처리방법 (좌동)	
제4조 공과금 납무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 (생략)	제4조 공과금 납무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 (좌동)	
제5조 공과금 납부 시점 (생략)	제5조 공과금 납부 시점 (좌동)	
제6조 준용 (생략)	제6조 준용 (좌동)	

개정 전(구.외환은행)	개정 후	비 고
<p><b>제1조 (「YES공과금 서비스」 개요)</b> 본 서비스는 신속한 공과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고지서 합계금액 등을 기재한 예금청구서 및 공과금 고지서를 소정의 봉투에 봉합하여 접수함에 투입하면 은행은 이를 접수하여 공과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p>	<p><b>제1조 서비스 개요</b> 공과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이용하여 공과금 납부금액과 인출계좌 비밀번호(고객연락처)등을 확인하고 공과금 고지서를 투입(스캔)하면 해당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공과금을 자동납부하는 서비스 입니다.</p>	<p>(구.하나은행 약관 준용_ 서비스 서비스 개요 등 전반적인 개정)</p>
<p><b>제2조 (서비스 이용 및 본인확인)</b> ① 서비스 이용은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제외)거래자로 하며, 「YES공과금서비스」신청서(예금청구서 겸용)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본 서비스는 통장과 인감없이 거래하며 출금시 이미 등록된 비밀번호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한다. ③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과금 납부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p><b>제2조 서비스 이용</b> 다음과 같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 :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당좌예금 제외) 보유고객 2. 이용수단 : 현금카드, 통장(통장 출금거래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도 통장으로 공과금 납부가가능) 3. 이용시간 : 당행 영업시간이내 4. 이용수수료 : 고객 이용 수수료는 없음 5. 이용 가능한 고지서의 종류 : 국세, 지방세, 금융결제원 지로, 당행과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된 관리비 등. 단, 관세 및 등록금은 제외 6. 이용 한도 : 1회 거래에 최대 5장까지 이용가능</p>	<p>(구.하나은행 약관 준용_ 서비스이용 대상 고객 등 구체적 기재)</p>
<p><b>제3조 (지급금액 착오시 처리)</b> 고객이 출금 요청한 금액과 은행에서 확인한 고지서 합계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고지서의 금액과 출금요청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출금하고 통지한다. ② 출금 요청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이 1만원이하이면 은행에서 대신 납부하고 통지하면 고객은 다음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고객 계좌(의뢰서에 기재하였던 계좌)에서 출금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을 회수할 수있다.</p>	<p><b>제3조 공과금 납부금액이 틀리는 경우 처리방법</b>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 금액이 공과금 고지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기 납부한 공과금 금액을 납부된 계좌로 입금(정정)하고 공과금 고지서 금액을 자동 인출합니다.</p>	<p>(구.하나은행 약관 준용_ 납부금액 오류시 고객앞고지 후 정정 및 자동인출)</p>
<p><b>제4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b>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고 봉투에</p>	<p><b>제4조 공과금 납부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b>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과금 납부처리가 되지</p>	<p>(구.하나은행 약관 준용_</p>

<p>기재한 연락처로 통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p> <p>① 신청계좌가 사고신고 등 지급제한으로 출금할 수 없는 경우</p> <p>② 신청계좌의 지급자금 부족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p> <p>③ 고지서에 지시된 사항(수납은행, 납부기일 등)을 위반하여 투입된 고지서</p> <p><b>제5조 (공과금이 납부되는 시기)</b> 출금요청한 계좌에서 여러건(카드대금 결제,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정하지 아니하며, 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해당계좌에서 출금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계좌의 잔액은 해당일 16시 30분(토요일 13시 30분)까지 현금화 된 잔액 범위내로 한다.</p> <p><b>제6조 (납부영수증 교부)</b> 고객용 납부영수증은 통장에 고지서별 출금내역 인자로 대체하며, 납부영수증 교부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봉투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송부하거나 창구에서 교부한다.</p> <p><b>제7조 (준용)</b>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은행내규를 적용한다.</p>	<p><u>않고 고객이 등록된 연락처나 당행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동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u></p> <p>1. '공과금 납부금액'이 '공과금 고지서 금액'보다 부족하고 그 부족액이 통장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p> <p>2. 결제전 자금화 처리하여 납부한 미결제 타점권 (자기앞 수표, 가계수표)의 부도시</p> <p>3. 공과금 고지서에 지시된 사항(수납은행, 수납가능지역, 납부기일 등)을 위반하여 투입된 공과금인 경우</p> <p>4. 공과금 고지서가 훼손되어 중요정보(수납기일, 수납금액 등)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p> <p><b>제5조 공과금 납부 시점</b>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완료 때를 공과금 납부완료로 합니다.</p> <p><b>제6조 준용</b>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준용 합니다.</p> <p><b>제7조 &lt;삭제&gt;</b></p>	<p>납부 무효 처리 사례 구체적 기재)</p> <p>(구.하나은행 약관 준용_ 납부시점을 계좌인출 완료한 때_ 정확한 명시)</p> <p>(구.하나은행 약관 준용_ 영수증 교부불요로 인한 항목삭제 및 구행명 삭제)</p>
---	---	--